

서울고등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202894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박용식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경홍

변론 종결 2021. 3. 12.

판결 선고 2021. 4. 16.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55712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15,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21. 4. 16.까지는 연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419,89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330,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13쪽 13줄부터 15쪽 3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만일 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인 하자 없는 목적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 즉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 있는 이 사건 방화문을 시공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도급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보수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방화문의 문짝만 교환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보수비 584,711,677원에서 디지털 도어록 교환비 183,668,745원을 뺀 401,042,932원인바,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같은 금액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 방화문 전체의 하자보수비 중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보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6.42%(= 584,711,677원 ÷ 1,036,180,868원, 소수점둘째 자리 미만은 버림, 이하 '하자책임비율'이라 한다)인 사실, 선행 소송의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5,781,759원임이 확정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0999), 원고는 위 금액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 즉, 선행 소송은 피고가 이 사건 방화문의 시공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것인 점, 원고는 선행 소송의 최종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함께 소송비용확정절차에 따른 소송비용 45,781,759원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였던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45,781,759원 중 하자보수비율에 상당한 25,830,068원(= 45,781,759원 × 56.42%, 원 미만 버림)은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50%인 213,436,500원 {=(401,042,932원 + 25,830,068원) × 50%, 원미만 버림}으로 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13,436,5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200,521,46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 4.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0. 7.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2,915,03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에 소송비용을 지급한 2019. 5. 2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1. 4.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선행 소송에 따른 판결금을 가지급한 2017. 9. 20.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날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화문 설치공사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로 개정되고,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인데, 원고는 위 기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방화문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없어 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2) 선행 소송은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을 이 사건 방화문 전부(1,509개)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디지털 도어록 1,509개의 교체비용(1개당 162,395원)을 포함하였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방화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선행 소송이 인정한 하자보수비용에서 디지털 도어록 1,509개의 교환비용은 제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제1심 판결은 디지털도어록 1,131개의 교환비용만 공제하였으므로, 나머지 378개의 교환비용 61,385,310원(= 378개 × 162,395원)을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바(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 구 주택법 제46조에 의하면,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24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하 '사용검사일'이라고만 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만 하자보수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세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창호공사 중 창문틀 및 문짝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별표6).

한편,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과 구 주택법은 입법 목적,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와 범위,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수 있는 권리자와 그 의무자,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 등이 서로 다르므로, 각 법률에서 정한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구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단서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구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제46조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만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 주택법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밖에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정하지 않는 사용검사일 전 발생 하자나 오시공·미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의 제한 없이 구 집합건물법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자체가 상당한 무게와 두께의, 쉽게 변질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고, 견고하게 설치되는 것이 통상적인 점, ② 그로 인하여 방화문은 통상적인 개폐 등의 사용만으로 내화성능이 급격히 감소하리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방화문의 성능이 설치 후 급격히 저하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통상적인 거주 환경, 즉, 단순히 입주자들이 문을 열고 닫는 환경에서는 방화문의 내화성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리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④ 방화문은 통상적으로 비차열성능과 차연성능 외에도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통상적 사용에 의한 충격으로 뒤틀림이나 벌어짐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오히려 이 사건 방화문 자체에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사정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⑤ 선행 소송의 감정절차에서, 상당수 방화문 시험체의 문짝에서 화염이 발생하였고, 문틈에서 발생한 화염은 문짝의 변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반면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창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개폐성능, 외기차단, 단열 등 창호 자체가 가지는 성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화 현상이 발생하여, 기능상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는 사용검사전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디지털 도어록 교체비용 공제 주장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화문은 피고가 시공한 세대

현관문과 피고가 시공하지 않은 디지털 도어록이 각 1개씩 결합되어 일체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방화문 1,509개(= 19평 현관문 53개 + 24평 현관문 511개 + 33A평 현관문 267개 + 33B평 현관문 267개 + 34평 현관문 292개 + 44평 현관문 119개)를 설치한 사실, 선행 소송의 항소심은 이 사건 방화문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을 전유세대 현관문 문짝 교체비용에 이 사건 방화문의 불합격을 75%를 적용하여 584,811,677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써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선행 소송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는 전유세대 현관문의 개수가 총 1,131개(= 1,509개 × 이 사건 방화문의 불량률 75%)임을 전제로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였으므로, 선행 소송에서 법원이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보수비용을 전유세대 현관문 1,509개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이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앞서 추가로 지급 의무를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후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재령, 판사 심영진